

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2
----------	-----

2022년 9월 21일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년 8월 29일, 김용호 의원(찬성자 67명)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
(2022년 9월 21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용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에서 "한옥밀집지역"에 대한 정의를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나, 관련 조례가 2018년 1월 4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근거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(1) "한옥밀집지역"을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1항에 따르도록 함. (안 제2조제1호)

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, 현행 조례 제2조에서 "한옥밀집지역"에 대한 정의를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, 근거가 되는 조례가 타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[표]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한옥밀집지역"이란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한옥밀집지역"이란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■ 서울소방재난본부 한옥밀집지역 관리 현황

- 현재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1)에 따라 서울시내 11개소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.

1) 제15조(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② 시장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한옥건축지정,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[표]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지정 현황: 11개소

● 종로구: 6개소 ('18.5월 익선동 신규 포함)

구 분	종로구						
	소 계	인사동	북 촌	돈화문로	경복궁서측	운현궁	익선동
위 치	6개소	종로구 인사동, 관훈동 일대	종로구 가회동, 삼청동 일대	종로구 권농동, 와룡동 일대	종로구 체부동, 효자동 일원	종로구 견지동, 운니동 일대	종로구 익선동, 낙원동 일대
면 적(m ²)	2,175,484	122,200	1,076,302	137,430	582,297	226,134	31,121
건축물현황(동) (한옥/비한옥) 한옥비율(%)	6,490 (2,326/4,164) 35.84%	471 (158/313) 33.6%	2,782 (1,233/1,549) 44.3%	715 (146/569) 20.4%	2,136 (668/1,468) 31.3%	386 (121/265) 31.4%	213 (118/95) 55.3%
지정공고일		'09.03.05	'02.07.02	'09.03.05	'10.06.24	'09.03.05	'18.05.10

● 성북구: 5개소

구 분	성북구					
	소 계	앵두마을	선잠단지	성신여대주변	정릉시장주변	보문동일대
위 치	5개소	성북구 성북동1가 일대	성북구 성북동 일대	성북구 동선동2가 일대	성북구 정릉동 일대	성북구 보문동6가 일대
면 적(m ²)	97,060	31,245	5,868	14,097	22,545	23,305
건축물현황(동) (한옥/비한옥) 한옥비율(%)	658 (169/489) 25.68%	207 (38/169) 22.5%	64 (20/44) 45.5%	93 (48/45) 51.6%	132 (25/107) 19.84%	162 (38/124) 23.46%
지정공고일		'14.12.26	'14.12.26	'16.03.24	'16.03.24	'16.03.24

○ 그리고 소방재난본부는 「소방기본법」 제13조2)에 따라 자체 심의회를 거쳐 11개소 중 4개소(종로구 인사동, 북촌, 경복궁 서측, 익선동)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.

2) 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(火災警戒地區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시장지역
 2. 공장·창고가 밀집한 지역
 3.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
 4.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
 5.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
 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
 7. 소방시설·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
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·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
- ② ~ ⑥ 생략

■ “한옥밀집지역” 정의 규정 정비에 대한 의견(안 제2조제1호)

- 안 제2조제1호는, “한옥밀집지역”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경우,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와 병행 운영됨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정비·개선하고 관련 상위법령과 연계한 건축자산의 종합적 관리기반을 마련한다는 사유로,
 - 지난 2018.01.04일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(2018.07.05.시행)하면서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였으나 당시 동 조례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왔으며, 본 개정안을 통해 인용 조례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- 다만, 관련 조례가 2018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, 소방재난본부는 소관 조례들에 대해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 시 조례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김용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경훈, 김규남, 김기덕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박철성, 박환희, 서상열, 서준오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송도호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경숙, 이민석, 이봉준, 이상욱, 이상훈, 이숙자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이희원, 임만균, 장태용, 정준호, 최민규, 최유희, 최재란, 최진혁, 한 신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67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 "한옥밀집지역"에 대한 정의를 관련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나, 관련 조례가 2018년 1월 4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새로운 근거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"한옥밀집지역"을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1항에 따르도록 함. (안 제2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한옥밀집지역"이란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한옥밀집지역"이란 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한옥밀집지역"이란 「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.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